

대구예술대학교 국가근로장학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9.04.28.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근로장학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종합심의 하기 위하여 대구예술대학교 국가근로장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이 우리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된 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기본방침, 지급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근로장학사업에 관한 기본방침 및 예산

③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④ 기타 중요사항

제6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 직원이 된다.

제8조 (협조의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부처 및 관련 교직원에게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 월 20일부터 시행한다.